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

기 관 명 : 대한재가노인복지센터

소 재 지 :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로 15-21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제 2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 3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월 이용한도	1등급	2,069,900	가. 무료
	2등급	1,869,600	－ 기초수급권자
	3등급	1,445,800	나. 경감대상자
	4등급	1,341,8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총 청구액의 9%, 6%
	5등급	1,151,600	다. 일반 － 그 외의 모든 대상자로 총 청구액의 15%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없음	없음
	간 식	없음	없음
	이·미용비	없음	없음

- 1)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 ② 통원, 병원동행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병원이용에 따른 진료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자의 건강상태, 인지상태 등 특이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수급자와 함께 급여계획(계약, 변경, 해지)을 결정할 권리
 - ③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급여제공 계약내용 준수
 -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때
 - 2)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4) 배회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 5)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6)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제 2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2024년 요양 급여 수가는 아래 표와 같다.

1) 방문요양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2) 방문목욕(60분 이상 급여제공 시 금액이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 위 금액의 80%로 책정됨)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1회당)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1회당)	목욕차량 미이용시 (가정내 욕조)(1회당)
	84,670	76,340	47,670

2. 이용료 등 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수가로 산정하며, 고시가 변경되어 월 한도액 또는 수가가 변동될 시 이를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 적절한 급여제공이 되도록 한다.

3. 이용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4)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5) 수급자 요구로 서비스 시간, 비용,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변경절차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와 기관 각 1부 씩 보관한다.

5.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보고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별지 제 12호 서식 뒤쪽 참조)

방문요양 급여제공을 원하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심신의 특성과 욕구사정에 근거하여 자립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②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유지
- ③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2) 방문목욕

노인성 만성질환 또는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심신의 기능 향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급여제공 내용은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이 있다.